

(앞쪽)

제 호

역학조사반원증

사 진

3cm × 4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뒤 그림 없이 6개월
이내 촬영한 것)

성 명

농림축산검역본부/
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
자치도

55mm × 85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바탕색: 황색)

(뒤쪽)

역학조사반원증

소속/직급:

성 명:

생년월일:

활동기간: . . . 부터 . . . 까지

위 사람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3조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역학
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검역본부장/
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
별자치도 소속
가축방역기관의 장

직인

1. 이 증표를 소지한 자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
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·방해
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할
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1호에 따라 300만
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2.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
하지 못합니다.
3.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
에 넣어 주십시오.